

# 우송조리아카데미 연계교육 운영규정

제정 2002. 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본 교육원은 우송조리아카데미(WCA, The Woosong Culinary Academy: 이하 “본 교육원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본 교육원은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와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(이하 “양 대학”과 “외식조리학과”로 사용한다) 학생들(이하 “재학생”이라 한다)의 연계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외식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3조 (사업)** 본 교육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와의 연계적인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 수행
2. 일반인 및 조리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운영
3. 국내·외 조리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
4. 조리교육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
5. 외식관련 벤처 운영 및 기술지원
6. 산학협력추진 및 취업지원 사업
7.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
8.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**제4조 (위치)** 본 교육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-2번지 우송타워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5조 (원장)** ①본 교육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두며, 운영위원회에서 양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통할한다.

**제6조 (직원)** 본 교육원에는 필요에 따라 직원, 행정조교, 실습조교 및 근로학생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.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독립채산제기관운영규정 및 양 대학 관련규정에 따른다.

**제7조 (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용)** ①본 교육원의 학과 연계교육과정 및 특별과정의 강의를 담당할 교원 및 시간강사를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.

1.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를 말하며 양 대학의 채용기준에 따라 임용하며, 그 처우는 상호계약에 의하되 양 대학의 기준을 준용한다.
2. 시간강사는 본 교육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원장이 위촉하여 양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처우는 본 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.
3.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도교수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.

②급여,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8조 (운영위원회)** ①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할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으로는 우송대학교 총장 및 부총장과 우송정보대학 총장 및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양 대학의 처장 중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송대학교 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간사위원을 위촉하여 제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교육인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9조 (산학협력위원회)** ①본 교육원과 조리관련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, 본 교육원의 교수, 외식조리후원회원 및 외부 협력교수로 구성한다.

②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체측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양 대학의 산학협력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.

③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
2.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자문
3. 산업체 인사의 강의 및 실습지도 등의 교육 참여
4. 교과운영 및 평가에 관한 협의와 자문
5. 재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관한 협조
6.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산업체 학습시설 이용
7. 장학금 및 산학협력기금의 확보
8.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
**제10조 (교수회)**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교육원 소속 교수로 이루어진 교수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.

### 제3장 학과 연계교육과정의 운영

**제11조 (연계교육 협약체결)** 양 대학이 체결한 연계교육협약에 따라 외식조리학과 재학생의 연계 교육 과정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세부 조항에 따른다.

**제12조 (수업 및 재학연한)**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 재학생의 수업 및 재학연한은 양 대학 학칙에 따른다.

**제13조 (학년)** 재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양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**제14조 (학기 및 학습형태)** ①매년 학기는 1, 여름,2, 겨울학기로 한다.

②재학생의 현장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.

③수업시간은 본 교육원에서 별도로 계획하여 운영한다. 이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- 제15조 (수업일수)** 매 학기별 수업일수는 양 대학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업일수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6조 (입학)** 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하는 학생입학에 관한 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. 다만,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와 연계교육의 실시에 따라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학생의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편입시 연계교육 지침에 의거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- 제17조 (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)** 양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- 제18조 (교육과정)** ①교육과정은 양 대학 외식조리학과와 연계교육 추진에 따라 1학년과 2학년 과정은 공동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②교과목의 개설, 교과 및 이수의 구분, 실험실습의 부과, 학점배점, 학점단위, 이수학점, 수강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근거한 관련규정에 따른다.
- 제19조 (타학교 등의 학점인정)** ①재학중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교환학생, 학점교류학생, 해외 유학·연수생, 학점인정기관의 교류학생, 가상대학(학점인정기관)의 수강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은 심사를 거쳐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 
②학점인정 범위등 세부사항은 양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20조 (졸업에 관한 사항)**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교과목의 총 평균평점이 1.50 이상인 자에게는 양 대학 학칙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  
②졸업과 관련한 사항은 양 대학 학칙에 따른다.
- 제21조 (학생활동)** ①재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,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생단체를 둔다.  
②양 대학의 학생단체와 별도로 교육원내에 둘 수 있으며,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.  
③승인된 단체는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,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  
④학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양 대학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2조 (포상과 징계)** ①양 대학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  
②양 대학 학칙의 징계 및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제적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.  
③포상과 징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양 대학의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.
- 제23조 (납입금)** ①매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지정된 등록기일까지 소정의 수업료와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입금액은 학기 단위로 정한다.  
②납입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.
- 제24조 (장학금)** ①본 교육원의 소속 재학생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
②양 대학의 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  
③장학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대학의 장학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4장 특별과정 및 공개강좌의 운영

- 제25조 (특별과정 및 공개강좌 운영)** 본 교육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생이외의 자(이하 “교육생”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조리분야 산업체 경영자,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- 제26조 (교육일수)** 교육생 대상 강좌의 주 교육일수 및 수업시간은 교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- 제27조 (지원자격)**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에 대하여는 학력·자격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28조 (선발방법)**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29조 (설치과정 등)** ①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치과정 및 교육인원은 별도로 정한다.  
②제1항의 설치과정과 교육인원 및 제30조의 교육비 등은 교수회의 협의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- 제30조 (교육비)** ①본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 
②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31조 (수료 및 수료증 교부)** ①본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(별첨 1)을 교부할 수 있다.
- 제32조 (자치회)**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33조 (교육생 활동의 금지)** 교육생은 본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- 제34조 (포상)**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는 수료시 포상할 수 있다.

## 제5장 회 계

- 제35조 (회계년도)** 본 교육원 회계년도는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- 제36조 (예·결산)** ①원장은 매년 12월중 예산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 
②회계집행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2월 말일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제37조 (수입원)** 본 교육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특별교육과정등의 교육비
  2. 양 대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
  3. 위탁교육 지원금(위탁훈련시)
  4. 판매수익 등 기타 수입
- 제38조 (회계집행)** ①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교육원에서 관장한다. 특히, 교육생을 대상으로하는 특별과정등의 교육비는 본 교육원의 교육운영비와 자체발전 등을 위해 사용한다.  
②재학생의 수업을 위한 강사료, 집기 및 비품구입비, 실험·실습기자재구입비, 실습재료비 등은 양 대학에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6장 기 타

**제39조 (규정준용)** 재학생의 학사 및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다른 사항은 소속 대학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0조 (기타)** 본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)**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